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의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분장사무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양식산업과의 에너지절감장치 지원 분장사무를 어촌양식정책과로 이관하며,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에 중대재해 총괄 및 대응 분장사무를 추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연장하고, 1명(6급 1명)은 감축하며, 조선·해운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물학원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수산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의 협업으로 항생제내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의 관리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항제4호 중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양식산업발전기본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제3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4호를 삭제한다.

31.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에 관한 업무

제10조제5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해양수산 중대재해 총괄 및 대응

제42조제9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7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제9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항생제내성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두며, 별표 31의 정원 1명(해양수산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10의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위치란 중 “경기도 가평군”을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598”을 “599”로 하고, 일반직 계 “594”를 “595”로 하며,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원 “198”을 “199”로 한다.

별표 16의2를 삭제한다.

별표 17 중 총계 “604”를 “605”로 하고, 일반직 계 “600”을 “601”로 하며,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원 “206”을 “207”로 한다.

별표 17의2를 삭제한다.

별표 19 중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공업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운전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22”를 “23”으
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20 중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공업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운전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22”를 “23”으
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2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20”을 각각 “623”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613”을 “616”로 한다.

별표 31 중 2. 제46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의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2”
를 각각 “1”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및 “1”을 삭제하고,
“4. 제46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을 삭제하
며, 같은 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46조제1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제17호, 별표 16,

별표 16의2, 별표 17, 별표 17의2, 별표 19, 별표 20, 별표 27의 개정규
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⑩ (생략)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17>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u>	4. <u>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u> ----- --
5. ~ 30. (생략)	5. ~ 30. (현행과 같음)
<신설>	31. <u>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에 관한 업무</u>
31. (생략)	32. (현행 제31호와 같음)
<18> 양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u>에너지절감장치 지원에 관한 업무</u>	<삭제>
15. ~ 29. (생략)	15. ~ 29. (현행과 같음)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해사안전국) ① ~ ④ (생략)	제10조(해사안전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사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u>신설</u>	17. <u>해양수산 중대재해 총괄 및</u>

	대응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생략)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7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⑨ -----
<단서 신설> <후단 신설>	----- ---. <후단 삭제> -----

⑩ ~ ⑬ (생략) 제46조(한시정원) ① (생략) ② 삭제 ③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④ (생략) ⑤ <u>조선·해운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u>	<u>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u>)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46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③ ----- ----- ----- ---- 2024년 2월 29일 ----- -----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u>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두며, 별표 31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⑥·⑦ 삭제 ⑧ ~ ⑭ (생략) <신설>	⑧ ~ ⑭ (현행과 같음) ⑮ <u>항생제내성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학원에 두며, 별표 31의 정원 1명(해양수산물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	---	--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598</u>	• <u>599</u>	+1
일반직 계	• • • <u>594</u>	• • • <u>595</u>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 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u>198</u>	• <u>199</u>	+1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04</u>	• <u>605</u>	+1
일반직 계	• • • <u>600</u>	• • • <u>601</u>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 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u>206</u>	• <u>207</u>	+1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9]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 공업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운전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 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u>22</u>	<u>2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u>	<u>1</u>	-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0]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 공업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운전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 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u>22</u>	<u>2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u>	<u>1</u>	-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7]

국립수산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20</u>	• <u>623</u>	+3
일반직 계	• <u>620</u>	• <u>623</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13</u>	<u>616</u>	+3